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44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이륜자동차정기검사 [ ] 대행자 / [ ] 지정정비사업자 — [ ] 지정취소 통지서 / [ ] 업무정지명령서

업체명:

소재지:

대표자:

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[ ] 대행자 / [ ] 지정정비사업자 의

[ ]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[ ]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.

1. 처분 사유:

2. 처분 내용:

3. 업무정지 처분기간: 년 월 일부터
년 월 일까지

4. 근거 법령: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시·도지사 직인

귀하는 이 통지서(명령서)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